

위임장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사용)

1. 대리인 정보

이름		본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2. 위임내용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 및 투자성향 분석결과 확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은 본인의 투자성향을 잘 알고 있는 대리인에게 아래의 각 사항을 포함하여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 등을 위한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작성한 정보에 따라 본인에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합성원칙,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정성원칙 등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판매직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본인의 투자성향 파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행위 	(인)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한 일체의 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은 대리인에게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하는 행위, 투자위험에 대한 판단, 상품 결정, 가입서류 작성 및 상품설명서, 적정성 판단보고서, 투자성향에 적정하지 않은 거래 확인서, 거래확인서 작성 및 수령 등의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본인은 대리인에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청약철회권 행사, 제47조의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 등의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인)

본인은 위의 대리인에게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 실명확인, 상품 가입과 관련한 상품 내용 및 투자위험에 대한 판단, 상품 결정, 위험고지, 가입서류 작성, 제반서류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대리인의 행위에 따른 모든 결과, 책임 및 위험은 본인에게 귀속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에 따라 아래의 경우 투자권유 또는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 본인에게 적정하지 않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 위험회피목적외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

작성일자 년 월 일

고객명(위임인)	(서명/인)
----------	--------

